

사채권자집회 결의

1. 상장채권명	웅진에너지 3(KR61031311C2)
2. 집회일자	2015-12-11
3. 결의사항	<p>제 1 호 의안:</p> <p>-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까지 발생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,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수탁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 회사에게 위임한다.</p> <p>-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까지의 사이에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법원 인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을 취소하고, 기한이익상실 취소통지의 권한을 수탁회사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.</p> <p>-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로부터 그 효력 발생일까지의 사이에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관한 법원 인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,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원인사유 불발생 간주 통지의 권한을 수탁회사인 엔에이치 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위임한다.</p> <p>- 본건 사채의 이율 및 연체이율은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일부터 연 3%로 변경한다.</p> <p>-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사채인수계약의 만기보장수익률 관련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.</p> <p>-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제 2-3 조(재무비율 등의 유지), 제 2-4 조(담보권설정 등의 제한)는 삭제한다.</p> <p>-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제 1-2 조 제 14 호 가항 및 사채인수계약 제 3 조 제 15 호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다음의 항목을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제 1-2 조 제 14 호 가항 (5) 및 사채인수계약 제 3 조 제 15 호 다항으로 각 추가한다</p> <p>[발행회사가 본건 사채권자를 대상으로 신주발행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본건 사채를 신주 또는</p>

는 전환사채로 전환 내지 상환하거나,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로 신주 또는 전환사채 인수 대금과 상계하거나 현물출자 하는 방법으로 그 신주 또는 전환사채 인수를 청약하는 경우, 그에 상응하는 사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.]

- 발행회사는 채권자 명의의 이전등록이 완료된 사채등록필증 원본 등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본건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는 날부터 45 일 이내에 사채원금의 10%를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체 없이 아래와 같은 절차 및 방식에 따라 발행회사의 신주 또는 전환사채로 전환 내지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.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발행회사가 별도로 정한다. 위와 같은 전환 및 상환과 관련하여 본건 사채는 2016년 12월 19일까지 만기연장된 것으로 하고, 위 현금 상환 시점에 사채등록필증 원본 등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연장된 만기 시점에 발행회사가 위와 같은 전환 내지 상환 절차를 진행한다.

- 사채권자는 사채총액에서 위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중 사채권자의 선택에 따른 일정액을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 주식(이하"신주")을 인수하기로 한다.

- 신주의 발행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, 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%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한다.

- 사채권자는 사채총액 중 위 상환액 및 신주인수 가액을 제외한 잔액 전부를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이하와 같은 조건의 전환사채로 차환 한다.

- ① 전환가액: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증권외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-22 조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의 90%
- ② 전환가액 조정사유: 시가 미만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, 현금배당, 시가변동(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% 한도로 하향조정 가능) 등
- ③ 전환사채의 만기일: 2019년 12월 19일
- ④ 전환사채의 이율: 표면이자율 연 3%

	<p>(만기시 추가지급 이자 없음)</p> <p>⑤ 전환기간: 발행일 1년 이후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</p> <p>⑥ 조기상환청구권: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, 사채권자에게는 조기상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</p> <p>⑦ 기타 사채조건 및 청약방법, 필요서류: 차환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 기재에 따름</p> <p>-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,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차환 대상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부터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</p> <p>- 본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사채인수계약의 원리금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는 원금 일부 상환,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차환발행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, 그에 따른 절차는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대한 법원 인가가 확정되는 날 이후 지체 없이 이행한다.</p> <p>[원리금 지급대행자 및 지급사무처리장소: 사채의 원금 일부 상환, 출자전환 및 전환사채 차환발행은 사채권자가 발행회사 자금&IR 팀(아래 신고처)에 채권자 명의의 이전등록이 완료된 사채 등록필증 원본 등 발행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고, 신고한 원금 수령계좌로 발행회사가 원금 일부 상환을 하며, 사채권자는 원금 수령계좌를 변경하려 할 경우 이를 즉시 상기 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게 재신고 해야 한다.]</p> <p>* 웅진에너지 주식회사 자금&IR 팀 신고처: (주소: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 2로 37 자금&IR 팀)</p> <p>▶ 원안대로 가결</p>
4. 확인일자	2015-12-11
5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<p>- 상기 '3.결의사항'의 의안은 13 개항 전부가 1 개의 안건으로 각 항목별 찬반의사 표시는 불가능하며, 1 개의 의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의 결과입니다.</p> <p>- 상기 의안의 결의와 관련하여 본점소재지내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인가신청 예정이며, 최종 효력 발생은</p>

	<p>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발생될 예정입니다.</p> <p>□</p> <p>- 상기 의안의 최종 효력 발생일에 웅진에너지 홈페이지(www.woongjinenergy.com) 공고를 통하여 본 사채의 '사채권자 신고'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사채권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<p>※관련공시</p>	<p>2015.11.19 사채권자집회소집 (웅진에너지 제 3 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)</p>